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정보 안내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들어가는 말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퇴원을 준비하고 계신 환자·보호자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은 치료가 종료되었다는 즐거움과 함께 기대감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관리에 대한 걱정, 입원 전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 새로운 문제에 마주치게 합니다.

특히 치료 중 장애를 진단받았거나, 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또는 혼자 생활하거나 돌보아줄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집으로 퇴원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국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노인, 장애인 등)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등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를 통해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다양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많은 사회복지정보 중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스스로 찾고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퇴원준비상담을 통해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점검하여 퇴원 시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맞춤정보를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 본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준비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본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퇴원과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5년 4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목 차

1. 퇴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으로 안전한 퇴원을 위한 자가 점검표-----	3
- 퇴원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7
- 퇴원 후 안전한 생활을 위한 준비 필요성-----	8

2. 퇴원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 나의 마음 상태 체크해 보기-----	10
-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준비-----	12
- 소진예방을 위한 가족의 자세-----	14
- 의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15
-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료정보-----	16
- 환자돌봄에 도움이 되는 정보-----	20

3. 퇴원 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 고객가이드 앱 [맞춤형 의료사회복지 플랫폼] 활용하기 -----	22
- 돌봄-----	25
- 간호-----	38
- 보조기구/복지용구-----	43
- 주거-----	52
- 교통 및 이동-----	56
- 생계-----	62
- 일자리-----	66
- 사회복귀-----	69
- 정신건강-----	71
- 돌봄 가족 지원제도-----	73

4. 전원 (요양 / 재활 / 호스피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원병원 입원 절차 안내-----	76
- 요양 재활병원 찾는 방법-----	77
-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입원 안내-----	78
-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찾는 방법-----	80
- 연명의료결정제도-----	81

5. 그 밖에 복지정보 및 기관은 무엇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 -----	83
- 서울시 운영 [서울 복지포털]-----	84
- 서울시 정신건강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	85
- 보건복지부 [중앙 치매센터] -----	86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정보 포털] -----	87
- 별첨 : 본원 인근 복지관 연락처 -----	88

1. 퇴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으로의 안전한 '퇴원'을 위한 자가 점검표

환자분이 안전하게 집으로 퇴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퇴원준비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응답	
1. 퇴원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1-1 퇴원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퇴원 후 주 돌봄제공자가 결정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1-3 퇴원 후 돌봄자원(간병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활용이 준비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1-4 퇴원 후 사용할 보조기구(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5 퇴원 후 어떤 복지제도(장애인 등록, 장기요양보험 등)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6 퇴원 후 이용할 외부 이동수단(자가용, 대중교통, 장애인콜택시 등)이 준비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1-7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보건소, 복지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8 퇴원 후 사회적 활동(직업, 학업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집에서 생활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2-1 퇴원 후 집에서의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2 집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운동, 외래 진료 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3 집에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취미, 오락 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4 집에서 생활할 때 예상되는 물리적인 환경의 불편함(계단, 문턱 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5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보조용품(손잡이, 목욕의자,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준비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3. 복용해야하는 약과 복용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1 복용해야 하는 약의 종류를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2 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3 약의 잠재적 부작용과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집에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문제와 대처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1 집에서 생활할 때 어떤 증상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2 집에서 생활하면서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병원 후속 일정과 이동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1 퇴원 후, 외래 진료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2 외래 진료 예약 등이 필요할 시 병원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3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방법이 준비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출처: 국립재활원(2022), 사회복귀지원 실무자를 위한 회복기 재활환자 퇴원 지원 매뉴얼, p. 21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HRQ) 'IDEAL Discharge Planning')



특히, 퇴원 후 장애로 인해 거동 및 일상생활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 거 정 보		
주거위치	☐ 대도시 ☐ 위성도시 ☐ 중소도시 ☐ 읍·면 ☐ 농어촌 ☐ 기타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아파트 ☐ 빌라 ☐ 상가건물 ☐ 원룸	
소유형태	☐ 자가 (소유자 :) ☐ 전세 ☐ 월세 ☐ 영구 / 공공임대 ☐ 무료임대 ☐ 기타 ()	
주거공간	☐ 침실 (개) ☐ 거실 ☐ 주방 ☐ 욕실 및 화장실 (개) ☐ 다용도실 ☐ 베란다	
이용교통	☐ 지하철 근접 ☐ 일반버스 근접 ☐ 마을버스 근접 ☐ 대중교통 이용 불편 (분 거리)	
주변환경	☐ 대형 쇼핑센터 ☐ 초·중·고교 ☐ 대학교 ☐ 대학병원 ☐ 종합병원 ☐ 보건소 / 일반 의원 ☐ 주민센터 ☐ 공공 스포츠센터 ☐ 공원 (산책로) ☐ 은행	
복지기관	☐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관 ☐ 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스포츠센터 ☐ 기타 ()	
주 거 환 경 평 가		
진입로	도로	☐ 평지 ☐ 언덕 ☐ 포장도로 ☐ 비포장도로
	출입구	☐ 단차 없음 ☐ 완만한 경사로 ☐ 단차 / 경사도 심함
	승강장치	☐ 필요 없음 ☐ 계단 ☐ 경사로 ☐ 엘리베이터
현관	문	☐ 자동문 ☐ 혼자 열 수 있음 ☐ 혼자 열 수 없음
	문폭	☐ 전동휠체어 가능 ☐ 수동휠체어 가능 ☐ 보행가능
	손잡이	☐ 레버형이나 일자형 ☐ 보조 장치 설치 ☐ 둥근형
	수납공간	☐ 전동휠체어 가능 ☐ 수동휠체어 가능 ☐ 없음
	조명등	☐ 자동식 ☐ 수동식 ☐ 없음
	단차	☐ 없음 ☐ 개조 불필요 ☐ 경사로 ☐ 높음 (cm)
거실	인터폰	☐ 있음 ☐ 없음 (직접 열어줌)
	스위치	☐ 적당한 위치 ☐ 너무 높거나 낮음 (바닥에서 cm)
	용이성	☐ 버튼식 (넓은형) ☐ 버튼식 (좁은형) ☐ 작동 힘듦
	콘센트	☐ 적당한 위치 ☐ 너무 높거나 낮음 (바닥에서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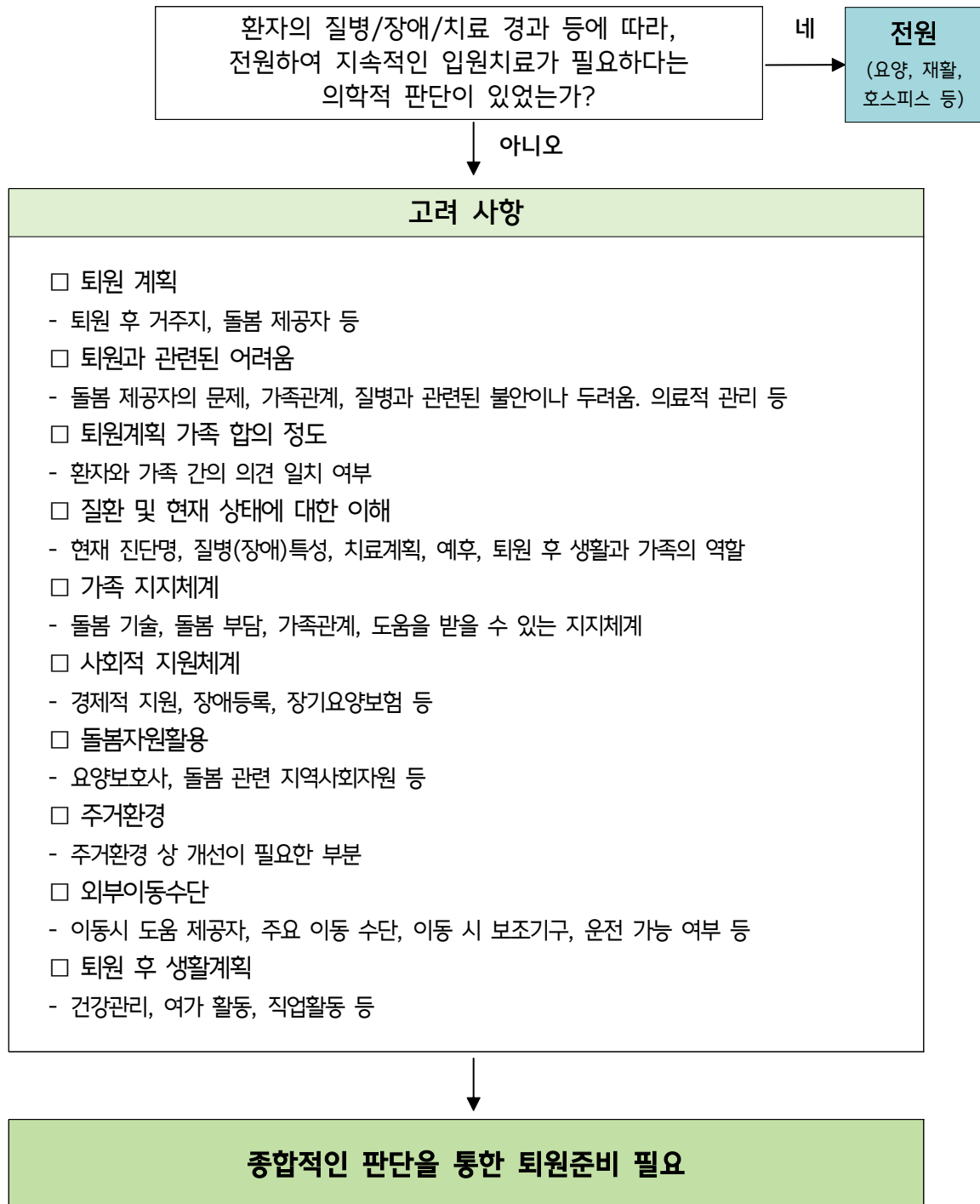
주 거 환 경 평 가		
침실	단차	☐ 없음 ☐ 개조 불필요 ☐ 경사로 ☐ 높음 (cm)
	침대	☐ 일반침대 ☐ 환자용 침대 ☐ 없음 (온돌)
	공간	☐ 전동휠체어 가능 ☐ 수동휠체어 가능 ☐ 보행가능
	스위치	☐ 음성인식 ☐ 리모컨 ☐ 투웨이식 ☐ 한쪽에만 설치
화장실 및 욕실	문	☐ 미닫이 ☐ 바깥쪽 여닫이 ☐ 안쪽 여닫이 ☐ 커튼
	문 폭	☐ 전동휠체어 가능 ☐ 수동휠체어 가능 ☐ 보행가능
	손잡이	☐ 레버형이나 일자형 ☐ 보조장치 설치 ☐ 둥근형
	단차	☐ 없음 ☐ 개조 불필요 ☐ 경사로 ☐ 높음 (cm)
	공간	☐ 전동휠체어 가능 ☐ 수동휠체어 가능 ☐ 보행가능
	바닥	☐ 미끄럼 방지 ☐ 불필요 ☐ 미끄러움
	변기	☐ 양변기 (일반형) ☐ 양변기 (비데) ☐ 수세식
	세면대	☐ 자동식 ☐ 일반형 ☐ 없음
	거울	☐ 전면 ☐ 상반신 ☐ 너무 높거나 낮음 ☐ 없음
	수도꼭지	☐ 코브라식 ☐ 싱글레버식 ☐ 냉온수 구분식
	샤워기	☐ 샤워부스 (샤워의자) ☐ 샤워기 ☐ 욕조 ☐ 없음
	안전바	☐ 변기 ☐ 세면대 ☐ 욕조 ☐ 샤워기 ☐ 벽면
	수납공간	☐ 이용 가능 ☐ 이용 어려움 ☐ 없음
	비상벨	☐ 설치 (전화겸용) ☐ 설치 ☐ 없음
주방	싱크대	☐ 자동식 ☐ 하부공간 오픈 ☐ 일반형 (사용가능) ☐ 너무 높거나 낮음 (cm)
	개수대	☐ 사용가능 ☐ 너무 깊어 잘 보이지 않음
	수도꼭지	☐ 코브라식 ☐ 싱글레버식 ☐ 냉온수 구분식 ☐ 사용가능 ☐ 너무 높거나 멀어서 불편
	가열대	☐ 가스렌지 ☐ 전기렌지 ☐ 사용하기 쉬움 ☐ 너무 높거나 낮아서 불편
	스위치	☐ 사용하기 쉬움 ☐ 너무 높거나 멀어서 불편
	식탁	☐ 휠체어 가능 ☐ 옮겨 앉아야 가능 ☐ 없음
	수납장	☐ 사용하기 쉬움 ☐ 너무 높거나 멀어서 불편
베란다 (다용도실)	출입문	☐ 혼자 열 수 없음 ☐ 혼자 열 수 있음 ☐ 커튼식
	단차	☐ 없음 ☐ 개조 불필요 ☐ 경사로 ☐ 높음 (cm)
	세탁기	☐ 드럼형 / 일반형 ☐ 사용하기 쉬움 ☐ 불편함
	전경	☐ 바깥 풍경 보임 ☐ 바깥 풍경 보이지 않음

(출처 : 국립재활원 - 주거환경평가 및 가정방문보고서 참고)

퇴원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퇴원을 준비할 때, 가장 고민 되는 것은 어디로 퇴원할 것인가? 가족 중 누가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퇴원계획을 준비할 때는 환자의 의료적 상황과 함께 환자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주변환경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후 안전한 생활을 위한 준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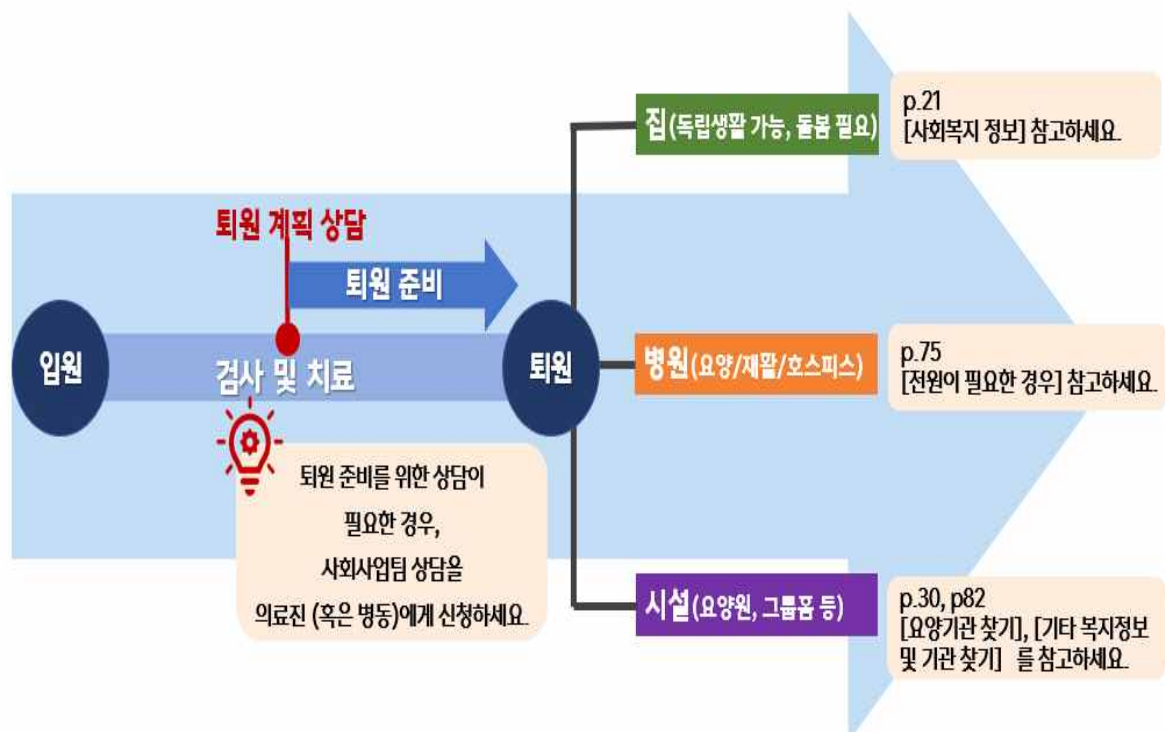
‘아직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퇴원 준비를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치료 중 퇴원 준비가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시점부터 환자의 퇴원 후 거처와 돌봄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환자 돌봄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물품, 돌봄 제공자의 역할, 필요한 의료정보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복지정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 및 가족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가 집으로 퇴원할 수 없어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기관을 탐색하고 해당 기관과의 전원 일정을 조율하며, 가족 내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급성기 병원의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만큼의 장기적인 재원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퇴원을 앞두고 다급하게 준비하기 보다는 치료 중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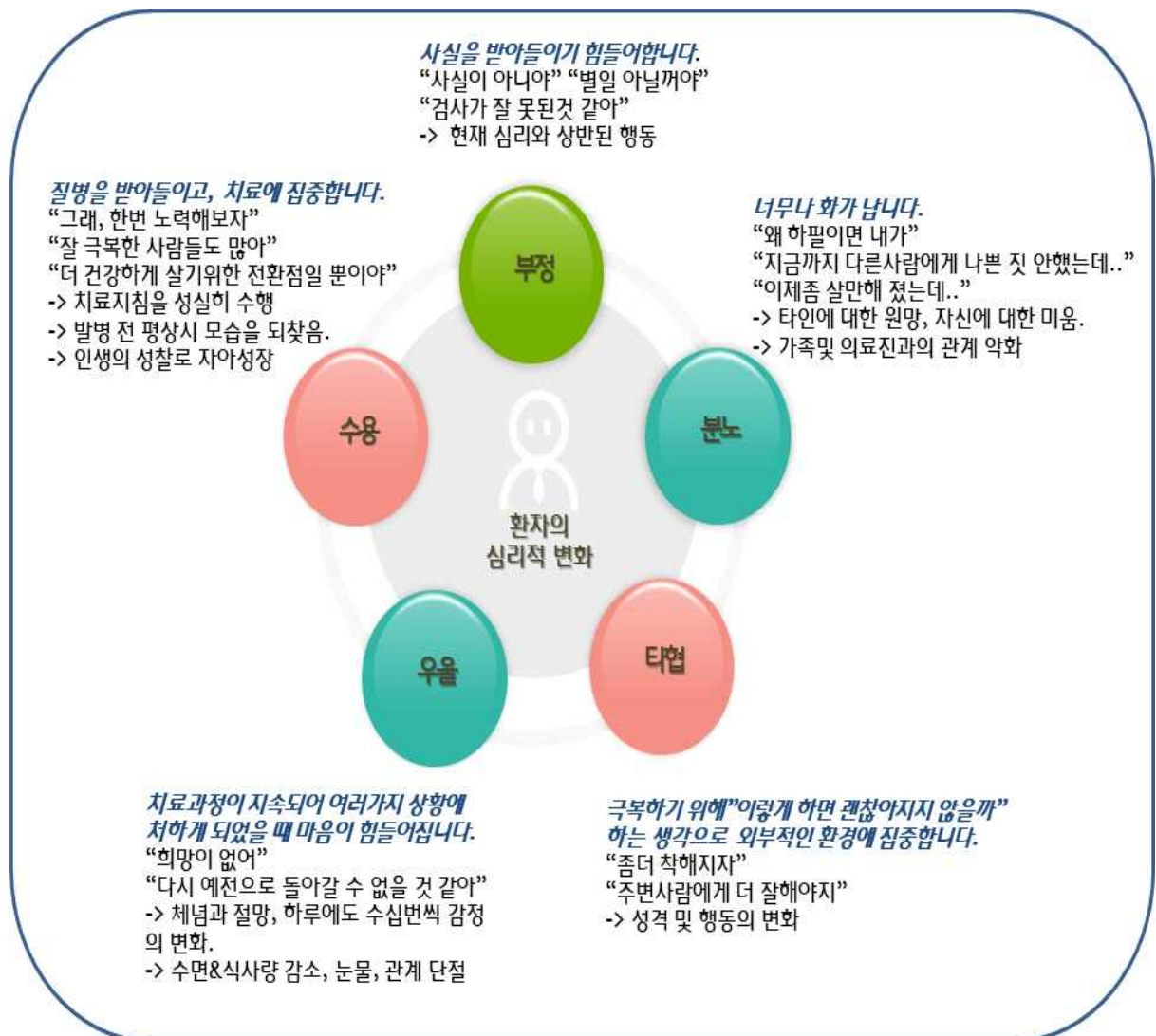


2. 퇴원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나의 마음의 상태 체크해 보기

예기치 못한 질병의 진단과 그로 인한 장애 및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그 순간 멍한 충격한 더불어 눈앞이 캄캄해 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질병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현재 퇴원을 앞두고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감정적 문제들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면,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안한 방식을 찾아보세요.

만약, 다른대로 극복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환자 건강 질문지(PHQ-9)을 통해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해보세요.

		전혀 없음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0	1	2	3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0	1	2	3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0	1	2	3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0	1	2	3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0	1	2	3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0	1	2	3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0	1	2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한다.	0	1	2	3

점수 : _____점

*** 우울 선별 검사 기준**

0-4점 : 보통상태

15-19점 : 중간-심한 우울

5-9점 : 가벼운 우울

20-27점 : 심한 우울

10-14점 : 중간 우울

*** 10점 이상의 점수일 경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담당교수(주치의) 혹은 간호사 선생님께 사회사업 상담을 요청하세요.

*** 20점 이상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준비

퇴원 후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은 변화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체계 내에서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환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생긴 변화는 곧 가족 전체의 변화임으로 퇴원 준비 과정에서 가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역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치료 과정에 부담이 필요한 가족의 역할

- 직접적인 환자 간병
- 환자를 위한 정서적 돌봄(안부 묻기, 격려와지지)
- 치료과정 의사결정과 행정적 처리(의료진과의 소통, 서류 처리 등)
-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
- 가사(청소, 세탁, 음식 준비 등)
- 물품 구입 및 정리(식재료, 의복, 생활용품 등)
- 재정관리(세금, 관리비, 통신비 등)
- 차량 관리
- 반려동물 관리

* 가족 구성원 중 주간병인이 있다면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가족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많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과 격려가 필요하며, 가족 내 다른 일들에 대한 적절한 부담이 필요하다.
- 입원치료 기간 중 병실에서 간병을 하며 생활하는 과정은 수면의 질, 영양, 개인적인 시간 활용등에 매우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보상이 필요하다.
- 간병을 하는 자신을 위한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예 :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활용 등)

* 환자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1. 수치로 표현하기

- 1~10 또는 1~100을 기준으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통증, 피로감, 어지러움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환자의 표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치에 따른 대응을 미리 정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인다.

2. 나 전달법 (I - message)

- “너(YOU)”가 아닌 “나”를 주어로 문장을 시작하고, 나의 의도나 감정을 설명한다.
- (너 전달법) “당신 이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을 해야죠.”
- (나 전달법) “나는 당신이 좋아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니 같이 운동해요.”

* 환자 돌봄과 관련한 중요 정보

- 긴급전화번호 : 가족, 간병인, 응급 상황에 필요한 사람 등
- 약물 및 의료정보 : 혈액형, 알레르기, 약물 복용에 대한 세부 사항
- 병력 : 질병이나 수술 이력, 이전의 병력, 가족력 등
- 의료기관 : 환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연명치료 거부나 이와 관련된 문서

(출처 : 사회복귀지원 실무자를 위한 회복기 재활환자 퇴원 지원 매뉴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2.2)



소진 예방을 위한 가족의 자세

■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질병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 너무 과보호 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것과 독립심을 북돋아 주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루 일과를 잘 계획하세요.

환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과 새로 배울 수 있는 일,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분류해 보십시오. 이런 이들에 필요한 시간을 잘 조정해 보세요.

■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방법을 배우세요.

환자를 들어올리거나 움직이다가 허리를 다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피로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허리를 다치지 않으면서 환자를 안전하게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 많이 지쳤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간병을 하다가 지치고 버거운 느낌이 들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시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휴식시간을 가지세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건강을 돌보세요	지지집단에 참여하세요
• 힘이 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 하세요. • 혼자서 책임지려 하지 말고 가족과 역할을 나누세요. • 누군가 도와주려 할 때 기꺼이 도움을 받으세요.	• 매일 최소 30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 어려움 이면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 간병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세요.	• 잘 먹고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 몸이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으세요. • 운동을 하거나, 이완 또는 명상을 해보세요	• 같은 경험을 통해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세요. •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보세요.

각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거나 가까운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시면 적절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재활원-장애인 가족의 우울 및 소진관리)

의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바쁜 병원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환자와 보호자가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효과적으로 의사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립니다.

1. 궁금하신 점은 미리 적어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많은 경우 의사들의 외래 및 회진시간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것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걱정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의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의료진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질문을 두려워하지 하세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빠르고 복잡한 의학적 용어는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 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 의료진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당신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사회적인 의무, 가정과 직장에서의 관계 등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당신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 요소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창피하더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이나 감정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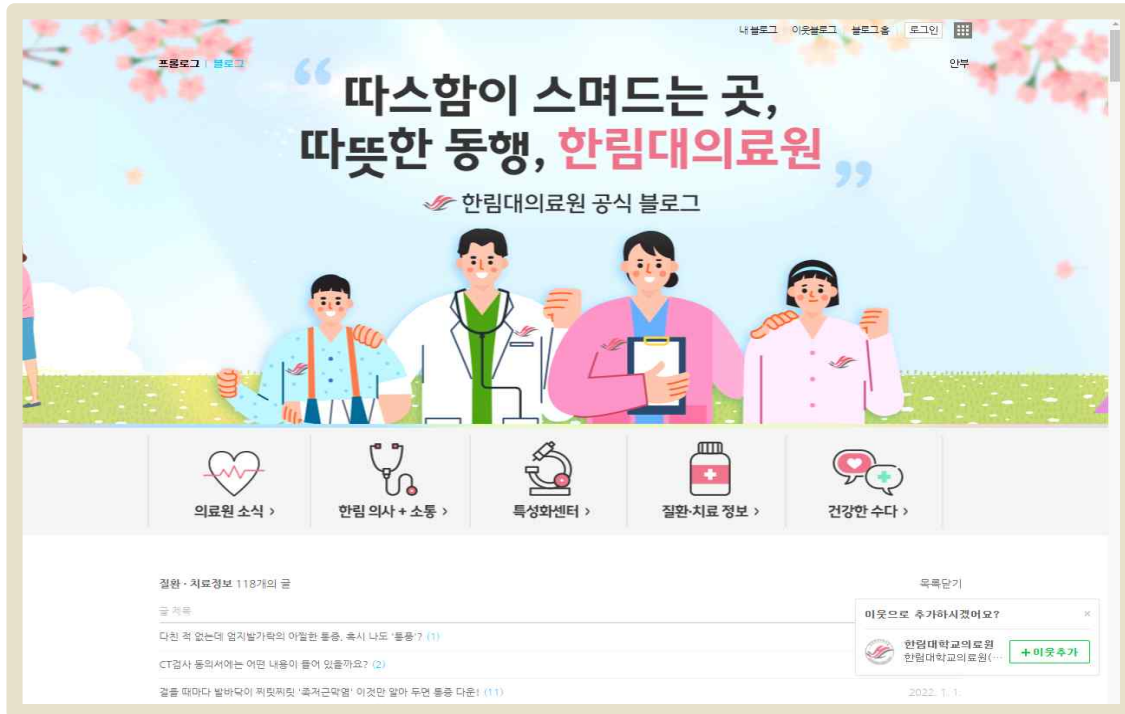
4. 의사와 함께 결정하기

최상의 결과를 위해 의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걱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 함께 의사소통하세요.

함께 의사소통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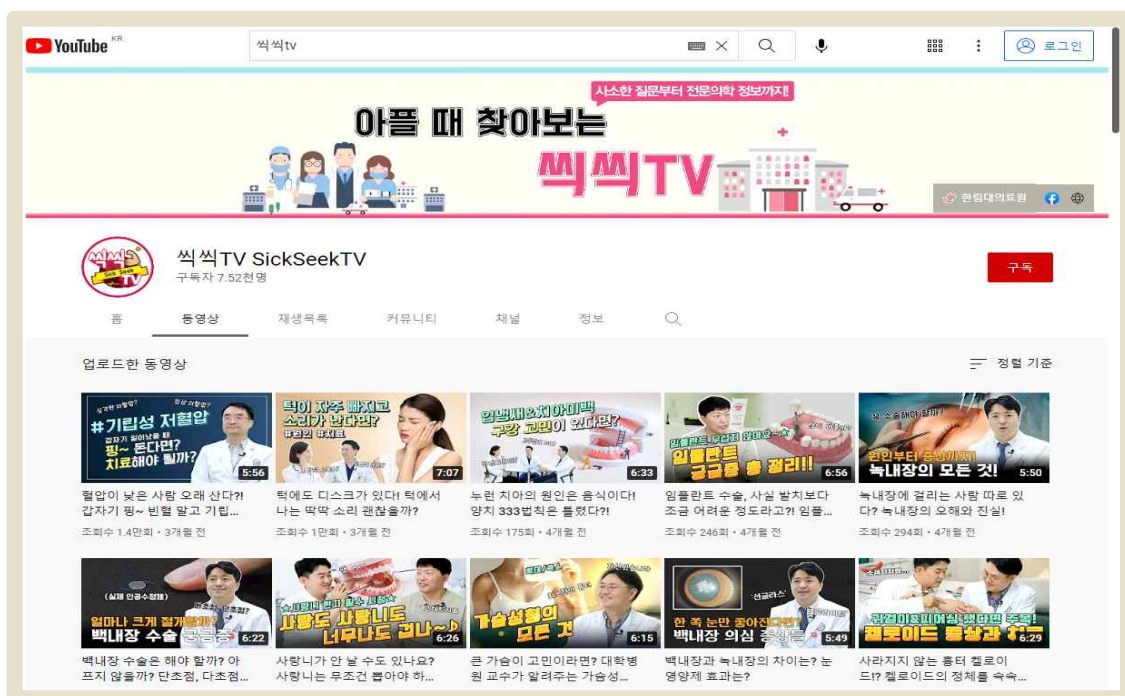
(출처 : Johns hopkins medicine “ Don’t be shy : 4 tips for talking to your doctor”
www.hopkinsmedicine.org)

▶ 블로그 https://blog.naver.com/humc_health



3. 한림대의료원 씹씹티비

- 딱딱하고 어려운 의학 관련 내용, 당황해서 깜빡하고 물어보지 못했던 건강 정보들.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의학정보 유튜브 채널



4. 주요 질환별 유용한 홈페이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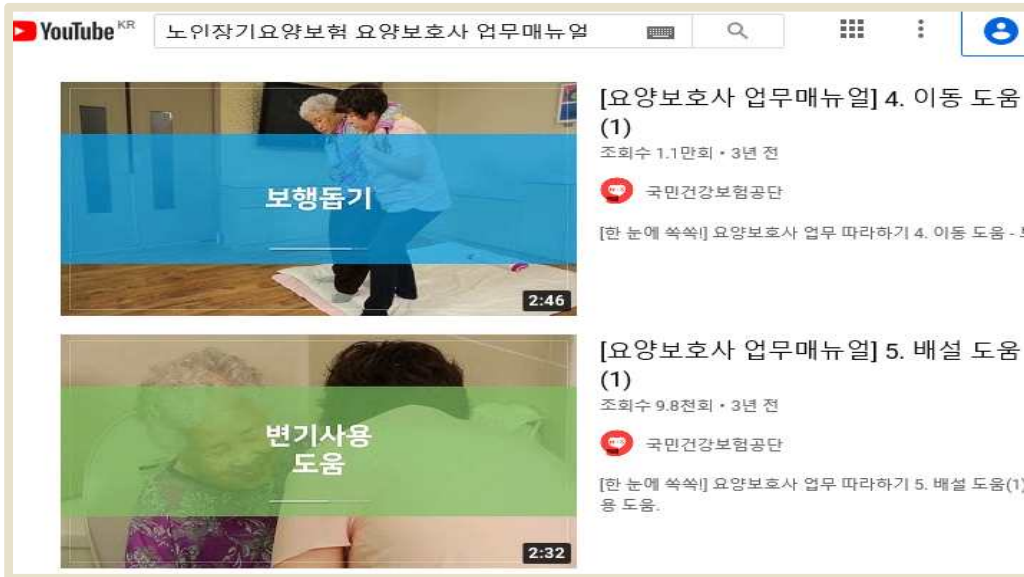
 암	국가암정보센터 https://www.cancer.go.kr/	 국가암정보센터
	한국혈액암협회 http://www.kbdca.or.kr/index.php	 한국혈액암협회
 뇌졸중	대한뇌졸중학회 https://www.stroke.or.kr:4454/	 대한뇌졸중학회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nrc/main.do	 국립재활원
 심장	대한심장학회(▶ 우리가족 ‘심장’지킴이) https://www.circulation.or.kr:4443/general/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장TV(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iDyclfrDIHe11ve7Gtdw_A	 대한심장TV
 신장	대한신장학회(▶ 일반인을 위한 ‘콩팥병’ 정보) http://www.ksn.or.kr/sub10/sub06.html	 대한신장학회

	대한투석협회(▶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교육 지침서) http://www.e-kda.org/blood/sub01.html	 대한투석협회
 당뇨병	대한당뇨병학회 https://www.diabetes.or.kr/intro.html	 대한당뇨병학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http://www.iddm.kr/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간	대한간학회(▶ 일반인을 위한 ‘간’질환 정보) https://www.kasl.org/general/sense/	 대한간학회
 호흡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동영상자료실) https://www.lungkorea.org/video/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결핵협회 http://www.knta.or.kr	 대한결핵협회
기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교육자료실) http://helpline.kdca.go.kr	 헬프라인
	한국뇌전증 협회(▶ 동영상자료실) http://www.epilepsy.re.kr	 한국뇌전증협회

환자 돌봄에 도움이 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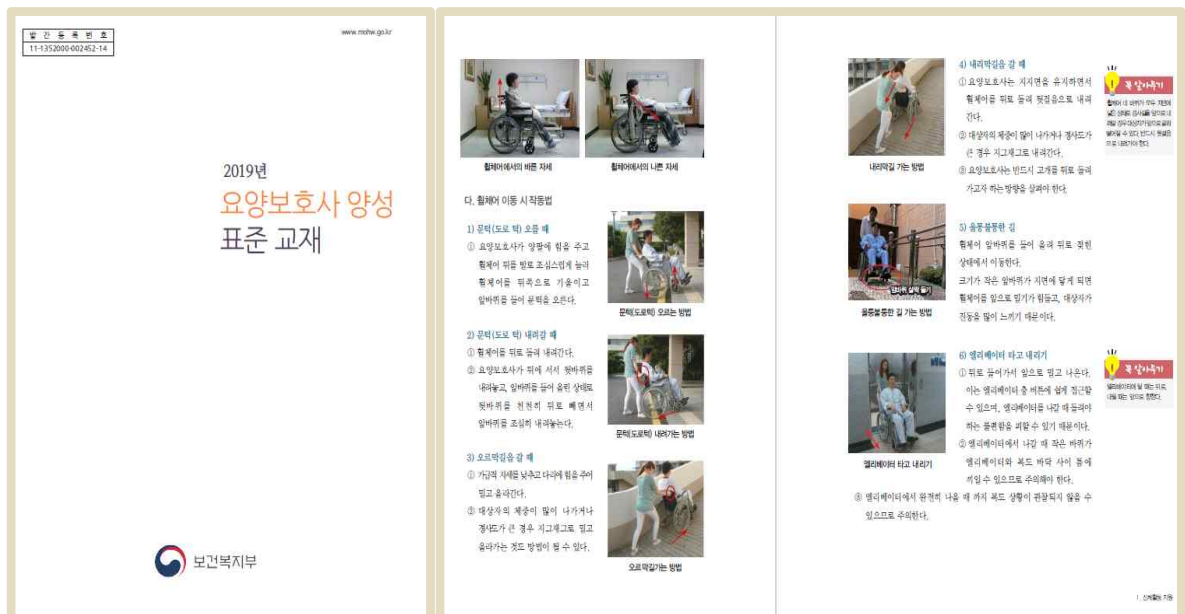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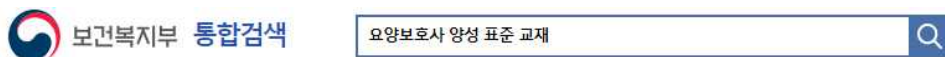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동영상

유튜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업무매뉴얼」 검색하세요.



2.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보건복지부 통합검색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검색하세요.



3. 퇴원 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고객가이드앱 ‘맞춤형 의료사회복지 플랫폼’ 활용하기

1. 맞춤형 의료사회복지 플랫폼이란?

환자와 가족 보호자의 원활한 퇴원준비를 위해 개발된 앱으로, 환자의 질환 및 상황에 맞는 의료사회복지정보를 한 번에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림대학교의료원 사회사업팀이 개발한 앱 서비스입니다.

2. 플랫폼을 통해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퇴원 준비부터 돌봄, 서비스, 복지용구,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여가, 일자리, 교통, 이동 서비스까지 환자의 질환, 연령, 거주지, 사회적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맞춤형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의료사회복지 플랫폼 이용 방법



4. 문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Tel.02-6960-1045/1043

사회복지정보 목차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5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31
▪ 서울시 돌봄 SOS -----	32
▪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34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35
▪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37

간호

▪ 의료기관 가정간호-----	3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40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41

보조기구/복지욕구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	43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	45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	47
▪ 보조기기 무료대여-----	48
▪ 보조공학서비스 센터-----	49
▪ 가정 산소치료-----	50

주거

▪ 주택개조 -----	52
▪ 주거급여 -----	54
▪ 주거지원 관련 기관 -----	55

교통 및 이동

▪ 장애인콜택시-----	56
▪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59
▪ 119 안심콜 서비스-----	61

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62
▪ 긴급복지 지원제도-----	63

▪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	64
▪ 장애인연금, 수당-----	65
▪ 국민연금 장애연금 -----	65

일자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7
▪ 동행일자리 지원사업-----	68

사회복귀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69
▪ 알코올 단주 모임-----	70

정신건강

▪ 서울시 정신건강보건사업 -----	71
▪ 자살예방센터 -----	72

돌봄 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 휴가제도-----	73
▪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74



[돌봄-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준:2025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1. 대상자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하단 참조)이 있는 자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병	G30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한의)		매병, 노망	자01
		졸중풍	다04
		중풍후유증	다06
		진전	다05
		진전	차02.2

2. 지원 내용

1) 서비스 종류

구분	내용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일반 20% 부담 - 40%감경대상자 12%부담 - 60%감경대상자 8%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 면제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일반 15% 부담 - 40%감경대상자 9%부담 - 60%감경대상자 6%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 면제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5 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잔존기능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훈련을 제공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음	
기타재가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 등급 별 혜택

(1) 재가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 시설급여

(단위: 원/1일당)

분류		수가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72,480
	2등급	67,250
	3~5등급	62,000
노인요양시설	1등급	90,450
	2등급	83,910
	3~5등급	79,240

(3) 복지용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를 재가 수급자에 한하여 연 160만원 이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구입품목(10종)	대여품종(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절차



갱신 신청 :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유효기간(1~3년)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유효기간 만료일의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등급 기준

상 태	수 준	장기요양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인자

3) 구비서류

대상자	서류	참고사항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별도 제출.

4. 자세한 내용 및 문의

- : 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
- :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 - 1000

▶ 퇴원 후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요양보호사)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으로 입소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하며, 퇴원 후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질환/환자의 상태에 따라 접수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 뇌졸중 첫 발병은 발병 후 3개월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다면 퇴원 후 바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이용 여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요양병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상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이 가능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판정과 관련 없음.

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생활시설
- 간단한 의료적 처치 및 처방은 가능하나, 의료적 필요성이 높으면 입소 어려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시설급여 판정) 필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요양보호사 재가서비스 기관 등) 찾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검색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비밀번호찾기

npbs_opr_new33

로그인

English

제도소개

민원상담실

알림·자료실

종사자마당

검색

민원 상담실

Long-term Care Insurance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 보험

모두가 꿈꿔 왔던 행복한 노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 드립니다

장기요양 민원상담

장기요양 신청

민원사무처리기관 안내

포상금제도안내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 지도

뷰어

다운로드

PDF

HWP

민원 상담실 >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스크랩 | 인쇄

장기요양기관검색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읍/면/동

도로명

전체

급여종류

전체

기관명

설립주체

전체

치매 관련급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제공기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통합재가서비스

기타

청구그림기관

장기요양기관패널

[돌봄-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준:2025/ 출처:보건복지부 매뉴얼)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자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 독거·존속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2.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안전지원	- 안전 및 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 교육)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 지원	- 안전, 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 지원	- ICT 관리, 교육 - ICT 안전 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아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 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돌봄-03]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

(기준:2025 / 출처: 서울시복지포털 wis.seoul.go.kr)

1. 대상자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대상

- | |
|---|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시민, 서울시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포함

2.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서비스 수가
일시재가서비스	가정에 요양보호사 또는 활동보조인이 방문하여 가사 활동(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서비스 지원	제공시간: 24시간
		수가기준: 1시간 24,580원
단기시설서비스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에서 보호	제공시간 : 24시간
		수가기준 : 1일 71,970원
동행지원서비스	혼자 외부활동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인 외부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등)시 동행 지원	제공시간 : 평일 9시~18시
		수가기준 : 1시간 16,300원
주거편의서비스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청소, 방역	제공시간 : 평일 9시~18시
		수가기준 : 1시간 16,300원
식사배달서비스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사를 배달	제공방법 : 연간 최대 30식
		이용금액: 1식 10,100원
안부확인서비스	일상적인 안부확인, 야간안전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 활용
건강지원서비스	만성질환자, 퇴원환자 등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보건(지)소 연계 건강돌봄서비스

3. 이용금액

- 1인 연간 한도 지원 금액: 1,800,000원
- 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본인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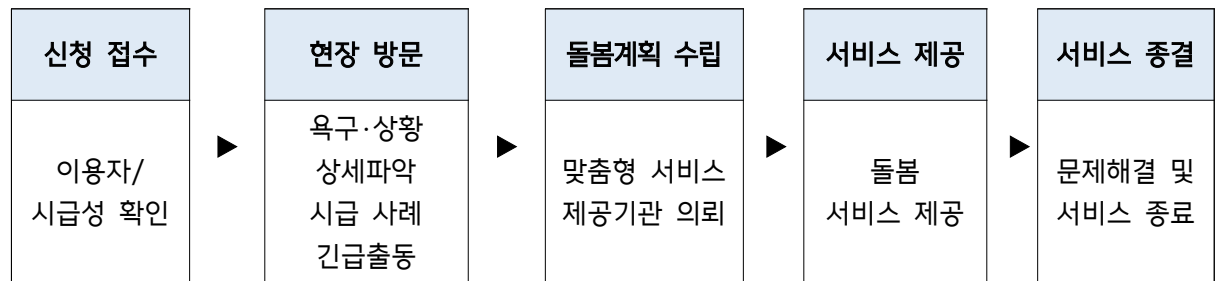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참고]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돌봄-04]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기준 2025/출처: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지침)

1. 대상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한 자

- 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3) 희귀난치성 질환자(상병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 또는 손자녀
-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2) 서비스 제공 기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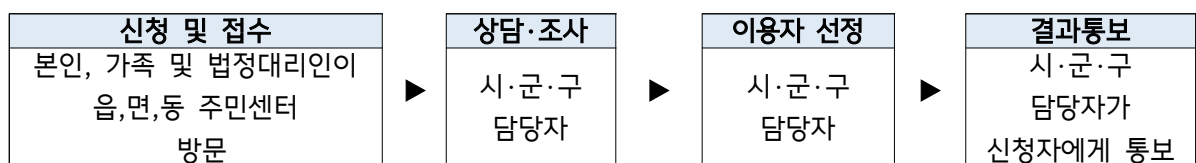
- 기간: 매월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연장 불가
- 시간: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3)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24시간	면제	월 24,770원	-
월 27시간	월 13,930원	월 27,860원	-
월 40시간	-	-	면제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3. 신청방법



[돌봄-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준: 2025 /출처: 보건복지부)

1. 대상자

- 만 6세 이상 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1) 활동 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2)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3)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 신청방법

1)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 단,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가족 또는 친족)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방문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3) 신청서류

신청자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 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읍·면·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여부
	-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돌봄-06] 재가암환자관리사업

(기준:2025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org.kr)

1.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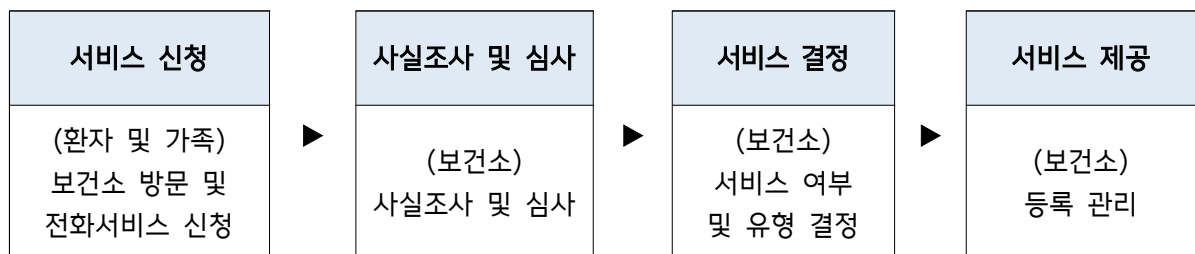
-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 생존자 등 모든 재가암환자
-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
- 취약계층 암환자 우선 지원(보건소별 상이)

2.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환자평가	활력징후측정, 통증점수평가, 의식정도 등 사정
투약지도	연고도포, 내복약 복용
기본 간호서비스	구강간호, 체위변경, 안정간호
증상 및 통증조절	약물치료, 통증조절, 물리치료, 주사치료
특수 간호서비스	특수장치 소독 및 관리, 관장, 관절운동, 산소요법, 욕창관리
자원봉사 서비스	개인위생관리, 가사일 보조, 차량봉사, 물리치료 보조
말기암환자 임종지지	
정서적·영적 지지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방문보건실)에서 신청 가능



[간호-01]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준:2025/ 출처: 가정간호사회 홈페이지 www.hcna.or.kr)

1. 가정간호 서비스란?

병원 퇴원 후 또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지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경우 병원의 가정간호전문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

2. 대상 및 내용

만성질환자,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항암 치료 후 수액요법, 뇌혈관질환자, 욕창 및 상처간호가 필요한 환자 등 담당 의사가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본간호**: 건강상태 파악 및 관찰, 문제 확인과 간호진단, 활력증후, 혈압측정, 체위변경 등
- **검사**: 혈액, 대소변, 가래, 상처분비물 등의 검사물 수집, 혈당검사, 산소분압검사 등
- **투약 및 주사**: 일반수액제,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의 혈관주사, 근육주사 등
- **치료적 간호**: 산소흡입, 드레싱, 염증성처치, 욕창치료, 방광/요도세척, 도뇨관삽입, 기관지절개관 교환, 위관영양, 석션, 장루/인공결장루 간호, 배뇨/배변훈련, 관장, 회음부간호 등
- **교육 및 훈련**: 식이요법, 위관영양법, 투약방법, 특수처치기구 및 장비 사용법, 감염증상 판별법, 인슐린 자가주사법, 고/저 혈당시 응급처치, 체위변경법, 상처/기구 소독법 등

3. 방문비용(1회 기준, 변동 될 수 있음)

가정간호 비용은 기본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건강보험(20%), 희귀/중증난치질환자(10%), 암환자(5%)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 병원구분(종별) 적용.

(2025년 1월 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기준)

	수가	건강보험 환자	산정특례환자	중증질환환자
기본방문료	79,000원	20% 본인부담	10% 본인부담	5%본인부담
진료행위별 수가 (치료 / 재료비)	건강보험 지정수가			
교통비	일반 수가	일반수가(정액)	일반수가(정액)	일반수가(정액)

- 비급여 재료비는 본인부담금 100% 적용.
- 의료급여 1종은 교통비 정도 발생.

4. 본원 근처 가정간호 이용가능 병원

병원	방문지역
고대구로병원 02-2626-1608 / 1609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여의도성모병원 02-3779-1688 / 1216	•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일부)
이대목동병원 02-2650-5087	• 서울: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마포, 서대문 • 경기: 광명, 부천 등 일부지역
중앙대학교병원 02-6299-2525	• 서울 전 지역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31-380-4083	• 안양, 의왕, 군포, 과천 • 기타: 편도 20km 내외 지역 가능

* 타 지역의 병원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s://www.hira.or.kr>) 접속 -> 의료정보 -> 세부조건별 의료기관 찾기 -> 분야별 가정간호 실시병원 탐색 -> 전화문의

세부조건별 의료기관 찾기

*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임

지역*

서울

시/군/구 선택

종별*

종별 선택

세부조건*
(최대 5개)

진료과목	병상	장비
특수운영기관	기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코로나19/호흡기	응급 및 야간
가정간호/재택	호스피스	장애인
치매	정신질환	심장질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
난임시술	침약 시범사업	기타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가정간호 실시기관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기관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기관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중증소아재택의료 시범기관

가정간호 실시기관

5. 신청방법

- ① 환자 및 보호자가 본원 질환관련 진료과 방문
- ② 의료진의 진단서를 발급(가정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함.)
- ③ 가정간호 신청 병원 방문하여, 해당과 혹은 가정의학과 담당의사와 상담 의뢰.
- ④ 해당병원 가정간호팀에서 상담 후 신청.

[간호-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기준:2025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1. 방문간호 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간호 / 진료의 보조 / 영양상담 등의 간호 지원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2. 대상 및 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중 간호처치영역에 표시된 대상자.

- **기본간호**: 건강상태 파악 및 관찰, 체위변경, 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 등.
- **추가간호**: 컷줄 교환, 단순도뇨 및 소변줄 삽입/교환/관리, 호흡기 간호(가래석션, 산소요법), 욕창 예방 및 치료, 단순 상처 치료, 관장 등.
- **재활운동**: 보행관리, 능동적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 **투약관리**: 투약이행 관리, 투약 정보 제공 및 중복 처방 확인, 투약 후 반응모니터링.
- **교육 훈련**: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인지훈련 등

3. 방문비용

이용시간	25년 수가	본인부담금 일반 15% 의료급여 환자는 면제
15분 이상~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4. 이용방법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병원 방문 -> 의사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방문간호 취급 재가요양센터 의뢰

2)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P.25 참고)

[간호-0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 2025 출처: 정부24)

1. 대상자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 서비스
- 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보건소 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제공
- 건강문제관리,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행태개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기본 건강관리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검진 안내 • 환절기 황사, 미세먼지 대비 건강관리 •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건강관리 •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관리 • 지진 등 재난 대비 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보호자(가족, 동거인 등) 상담 등 • 그 외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드림스타트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
건강행태 개선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 방문상담 실시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 방문상담 실시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조절을 위한 정보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임산부· 산후아	• 고위험임부 및 정상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영유아 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노인 허약예방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실시 • 운동·영양·구강관리·요실금 및 우울예방·인지강화·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제공 • 저작, 연하, 발음, 타액 분비 등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 치매 관련 건강관리 • 취미,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관리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와 상담 • 북한이탈주민의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 •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 스크리닝 •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장애인 재활 관리	•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예방운동 및 교육 • 기본 건강관리 : 위생, 영양, 피부관리(욕창, 체위관리), 구강위생관리 등 •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향상 운동 교육 •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3. 신청 방법

- 주거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
- 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로 의뢰 통해 신청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기준:2025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1. 지급 기준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급여비용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① 6%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자) ② 9% :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	없음

- 연간한도액: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연간 160만원한도(구입+대여 포함)
- 내구 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가 가능함.
단, 성인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기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음.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역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2. 이용 절차

복지용구사업소 상담(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가능여부 조회 → 복지용구 계약 체결 및 제공 → 계약체결 내용통보 →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3. 복지용구 유형 및 사용연한

구입품목 10종 (사용연한)		대여품목 6종 (사용연한)		구입 또는 대여품목 (사용연한)
• 이동변기(5년) • 목욕의자(5년) • 성인용 보행기(5년) • 욕창예방 방석(3년) • 미끄럼 방지용품 - 매트, 양말등	• 간이변기 • 지팡이(2년) • 안전손잡이 • 요실금팬티 • 자세변환용구	• 수동휠체어(5년) • 전동침대(10년) • 목욕리프트(3년) • 배회감지기(5년)	• 이동욕조(5년) • 수동침대(10년)	•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 경사로 실외용(8년) • 경사로 실내용(2년)

4.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대여 품목 : 6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욕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욕조(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2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기준:2025 / 출처: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안내)

1.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2. 보조기기 지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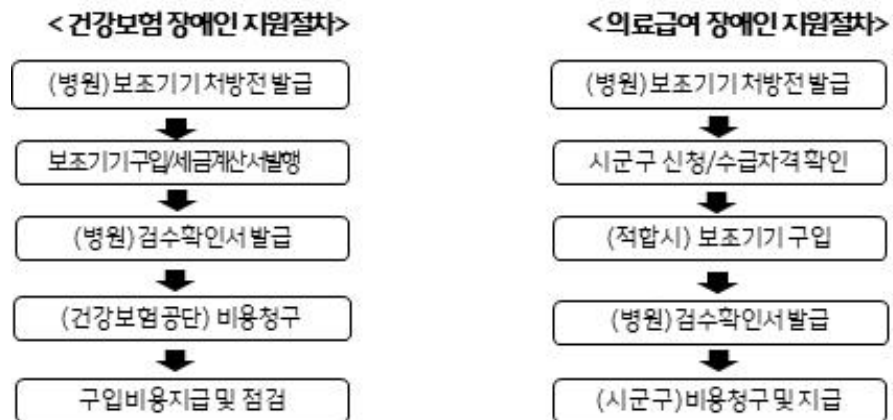
- 건강보험: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실 구입가의 90% 지원. 초과시 본인부담
- 의료급여: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실 구입가의 전액지원. 초과시 본인부담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품목(9개 분류, 90개 품목)

분류	품목 유형
팔의지(15)	①어깨가슴의지(미관형,기능형), ②어깨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③위팔의지(미관형,기능형), ④팔꿈치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⑤아래팔의지(미관형,기능형), ⑥손목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⑦손의지(미관형,기능형), ⑧손가락의지(미관형)
다리의지(12)	①골반의지,②엉덩이관절의지,③넓적다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④무릎관절의지(일반형,실리콘형),⑤종아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⑥발목의지(일반형,실리콘형),⑦발의지(일반형,실리콘형)
팔보조기(5)	①어깨보조기, ②팔꿈치-손목-손보조기(일반형, 각도조절형), ③손목-손보조기, ④손가락보조기
척추보조기(1)	①목보조기(필라델피아, 토마스소프트칼라, 자켓형), ②등-허리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③허리-엉치보조기(윌리엄식), ④등-허리-엉치보조기(TLSO식재킷),⑤허리보조기(코르셋)
골반보조기(13)	골반보조기
교정용신발류	맞춤형교정용신발
기타보조기기(24)	①수동휠체어(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②지팡이, ③목발, ④의안, ⑤저시력보조안경, ⑥콘택트렌즈, ⑦돋보기, ⑧망원경,⑨흰지팡이, ⑩보청기, ⑪개인용음성증폭기, ⑫전동휠체어(가군,나군), ⑬의료용 스쿠터, ⑭자세보조용구(앉기형,서기형), ⑮욕창예방방석, ⑯욕창예방매트리스 ⑰이동식전동리프트, ⑱보행차(전방,후방)
소모품(12)	①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②넓적다리의지 소켓 ③무릎관절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④종아리의지 소켓 ⑤발목의지(실리콘형)소켓, ⑥넓적다리의지 실리콘라이너, ⑦무릎관절의지 실리콘라이너,⑧종아리의지 실리콘라이너, ⑨발목의지 실리콘라이너

* 이외 보조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제도 > 건강보험제도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

4. 보조기기 구입절차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구입하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보조기기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만 지원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_ 건강웹툰)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기준:2025 / 출처: 보건복지부)

1. 대상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장애유형	교부품목(44종)
지체, 뇌병변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지지대 손잡이, 차량내 착석을 위한 좌석 및 방식, 전동칫솔 등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휠체어 액세서리, 소변수집장치, 장애인용 의료 및 신발, 개인용 비상 경보시스템 등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기억 지원 보조기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대화용 장치
뇌병변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 용 액세서리
심장	육창예방 방식, 육창예방 매트리스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시스템, 텍스트 음성 변화 장치 등
청각	신호장치, 소리증폭기, 진동시계,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등

3. 신청 및 문의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4] 보조기기 무료대여

퇴원 후 일시적인 보조기기(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사용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대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 대여 조건

- 1) 지역 보건소 : 해당 지원 내 주민
-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
- 3)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 내 주민

2. 대여 가능 물품

: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

3. 대여 가능 기간

: 보통 1개월~2개월

4. 신청 서류

: 신분증, 필요에 따라 의사 소견서

5. 대여 방법

- 1)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
- 2)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 해당 지사 및 지역에 따라 대여 가능 물품, 기간, 필요서류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으로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5] 보조공학서비스센터

1. 보조공학 서비스란?

- 보조기구 적용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 대체, 향상시키는 전문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상담 및 평가, 기구적용, 기구지원(대여), 개조 및 제작, 보조기구 재사용 사업 등

구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경기도 거주 장애인 및 노인
서비스	보조기구 관련 상담 및 평가, 보조기구 대여서비스, 맞춤제작 및 개조	
문의	-동남센터(강동): 02-440-5891~5 -동북센터(노원): 02-6926-6950~4 -서남센터(강서): 070-4578-3690~5 -서북센터(마포): 02-6070-9264~9	- 남부지역(수원): 031-295-7363 - 북부지역(의정부): 031-852-7363 * 북부지역: 가평, 고양, 구리, 파주,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동두천, 남양주
홈페이지	www.seoulats.or.kr	www.atrac.or.kr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6] 가정 산소치료

(기준:2025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안내 중 영양비지급안내)

환자 중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가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에 안정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영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1)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
- 2)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동맥혈 가스 검사
 -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55%)이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55%)이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산소포화도 검사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55%)이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3) 2019.7.1. 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2. 지급 금액

-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 기준금액의 90%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 : 기준금액과 실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해당 금액지급

[기준금액]

- 가정용 : 12만원/월
- 휴대용 :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3. 처방전문의 및 처방기간

- 처방전문의: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4.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건강보험공단 등록된 업소에서 발행한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5.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방문 ,우편, 팩스 통해 원본서류 제출



[주거-01] 주택개조 관련 기관

(출처 : 장애인 주택개조 매뉴얼, 중도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이드북)

1. 주택개조 시 고려사항

환자의 신체 상태나 기능에 따라 주택 내 생활공간에서 계획되어야 할 사항은 달라야 합니다. 지팡이나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경우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어 다니거나 앉은 채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등 상태의 차이를 반영한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각 주거공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도움 보행이 가능한 환자

특성	필요한 편의시설
목발, 지팡이, 워커 등 이동 보조기구 사용으로 휠체어 사용자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활동공간과 통과 유효폭 확보
몸을 굽히거나 일어서기 어렵고, 쉽게 넘어지며 빨리 또는 멀리 걸을 수 없다.	- 의자나 침대를 이용 - 안전손잡이 설치 -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선택 - 바닥이나 벽면 장애물 제거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장시간 서서 작업하기 힘들다.	좌식 겸용 작업대 설치
손과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작동이 용이한 물품 - 각종 생활 편의용품 사용

▪ 휠체어 사용 환자

특성	필요한 편의시설
휠체어 활동에 필요한 소요공간이 평소에 비해 약 2~3배의 폭과 4배의 공간이 필요하다.	80cm이상의 출입문 폭 - 충분한 통행 폭과 회전공간 확보 -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 확보
단차, 턱 등의 높이차는 이동의 장애물이 된다.	단차제거 / 경사로 설치
손이 닿는 범위가 좁다.	40~140cm 범위 내에 작업공간 배치
휠체어로부터 타고 내리는 동장이 어렵다	옮겨지는 장소와 휠체어 높이를 같게 한다.

■ 중증 와상환자

조금이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환자의 자립의욕을 증가시키고, 각종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성	필요한 편의시설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된다.	- 리모컨, 전동커튼, 전동칫솔 등 각종 전동기구 사용 - 컴퓨터로 작동되는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 음성으로 작동되는 음성 인식시스템 설치
가족이나 간병인(요양보호사 등)의 보조가 필요하다.	리프트 등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보조용품 사용

2. 서울시 주거 수리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업체 확인

서울특별시 집수리 닷컴 (jibsurf.seoul.go.kr) - [집수리 정보 제공] 통해 확인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집수리닷컴' (Jibsurf)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집수리 닷컴'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tabs for '집수리 아카데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집수리 지원', '집수리 정보 제공', and '알림소통'. The '집수리 정보 제공' tab is selected, displaying a map of Seoul with various repair service locations marked. On the right side, there are filters for '시공분야' (Construction Field), '시군구' (City/Gun/Gu), and '업체명' (Company Name). Below the filters, there are two sections: '1. 사회적협동조합 노노매기' and '2. 한두레협동조합'. The first section lists '도배장판 및 실내장식, 시설관리, 목공' and provides the addr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 (당산동)'. The second section lists '주택 및 건물 친환경 개보수, 철거, 인테리어, 건물관리 외' and provides the address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7길 6-5 3층 1호'.

[주거-02] 주거급여

(기준:2025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

1. 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가구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4인기준 292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4. 지원 내용

: 임차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지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 개량 지원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인터넷 접수.
-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www.myhome.go.kr) 확인.

[주거-03] 주거지원 관련 기관

기관명	내용	연락처
서울 주거포털	공공임대, 주거복지, 청년 신혼부부 지원 정보제공	housing.seoul.go.kr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일반 임대차 상담,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지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	02-2133-1200~1208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공동(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	1600-3456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생활가정 및 보호시설 입주연계	ghcenter.org 02-756-7060



[교통 및 이동-01] 장애인콜택시

(기준 2025 출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1. 대상

- 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심한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된 자)
 -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2.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
 - 예외적 운행지역: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 12개 市: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 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당일 진료 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3. 탑승인원

기준	보호자 동승시	휠체어 이용시
1대 1인	고객 외 3명까지 동승	고객 외 2명까지 동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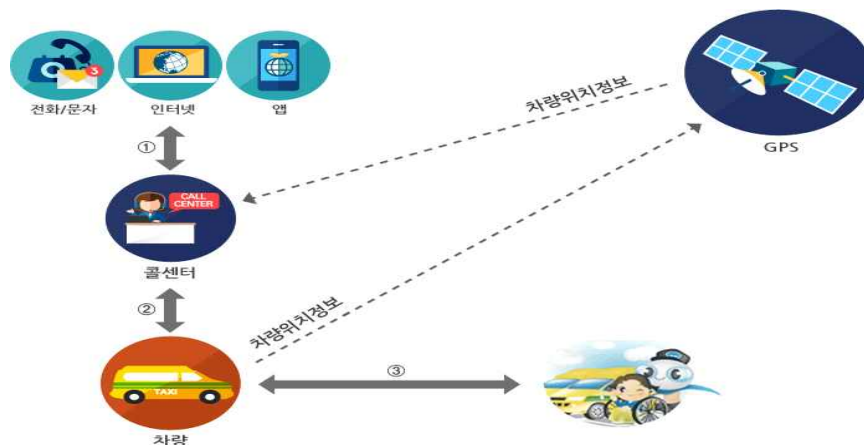
4. 신청접수

- 가입안내

- ① 가입방법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 ② 제출서류 : 이용대상 여부(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 단일장애의 경우: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유효기간 표기) 또는 '장애인증명서' 복합장애의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 결정서'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 대상: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외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 ③ 서류제출방법
 -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 제출 후 센터 전화(1588-4388) 연결 및 ARS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가능
 - 장애인콜택시 앱 업로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장애인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시 열람 가능
- ④ 기타사항
 - 가입등록 후 2주안에 관련서류 미제출시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3년) 초과시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삭제처리 됨. 고객 정보 삭제 이후 다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는 신규등록
 - 이용 중 고객정보(장애종류 및 등급,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동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정보변경으로 정확한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

- 전화, 문자(1588-4388), 인터넷/모바일

- 문자접수: 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접수방법	내용
바로콜	필요한 시간에 바로 접수 -07시 첫차 ※ 지역, 차량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 주말의 경우 교통상황, 행사 등으로 평일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전일접수	이용대상 :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 07시, 08시, 10시 신청가능(신청시간 24시간 전부터 접수가능) -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40명까지 신청가능 ※ 신청시간에 차량이 배차되어 고객 출발지까지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특정지역 신청이 물리는 경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정기접수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 - 치료, 재활, 통학, 출근, 귀가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 1일 2회만 신청가능하며, 출발지, 목적지 및 시간변경 불가 -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신청가능 ※ 접수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예약제 아님

5.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5km까지 (기본요금)	5km 초과시 10km까지	10km초과	비고
1,500원	km당 280원 추가요금	70원 / km	시간/지역 할증 없음 100원미만 절사

[교통 및 이동-02]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기준: 2025 / 출처: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1.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서울 시민 중 현재 1인 가구이시거나 「1인 가구 유사상황」에 처했을 때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도우미를 지원

2.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가구와 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서울시 거주자 포함) 중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민등록 상관없이 서울시에 실거주자 누구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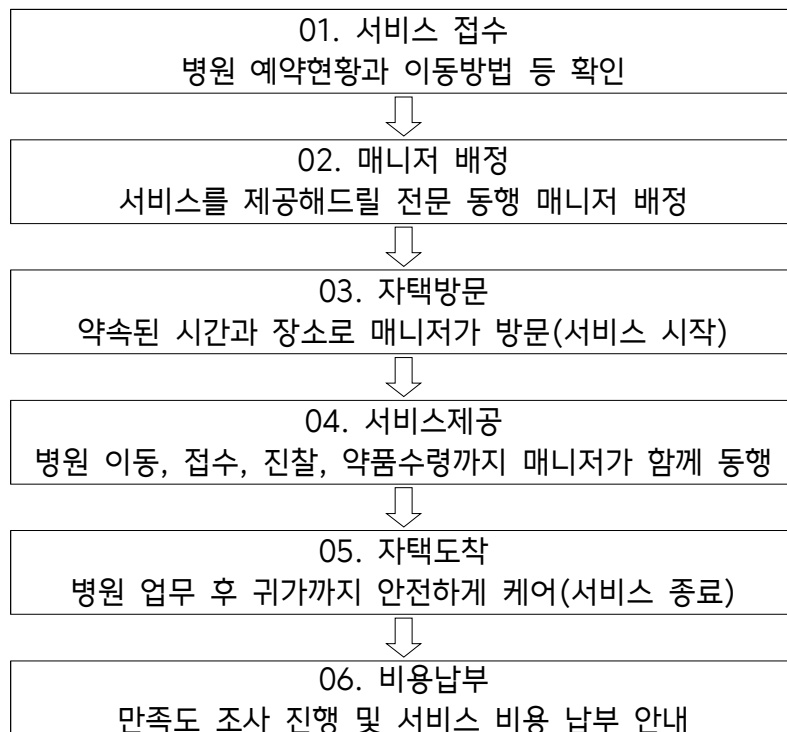
3. 지원내용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Door to Door)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요청 시 진료실 동행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4. 이용절차



5. 신청방법

전화신청: 1533-1179(일일친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seoul1in.co.kr/>)

6. 운영시간

평일 7시~20시(*주말 9시~18시, 주말은 사전 예약만 지원)

당일 연계 신청 건의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에 도착

※ 단, 응급환자는 119를 이용

7.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중위소득 85% 이하 이용료 무료

(*2022년에는 중위소득 100%까지 무료 이용 한시적 지원 확대)

이용한도는 연 6회로 제한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교통비(택시비 등)는 이용자 부담



서울시
병원 **안심** 동행

1533-1179 (일일친구)

청년, 중장년, 어르신 누구나 OK!

자원대상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운영시간 평일 07시 ~ 20시
(주말은 사전 예약만 지원)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교통비 자부담)
※ 중위소득 100% 이하연간 48회 무료
(49회부터는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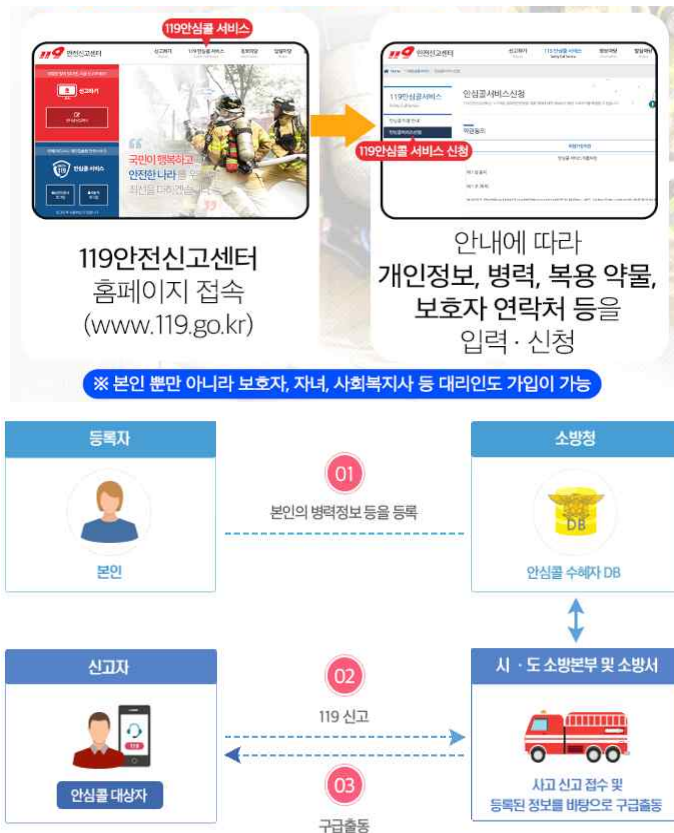
[교통 및 이동-03] 119 안심콜서비스

(기준: 2025 / 출처: 유비쿼터스119 안심콜 서비스)

1. 119 안심콜 서비스란?

-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실시(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SMS 로 자동 전송됨)

2.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필요

[생계-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2025 / 출처 : 복지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3.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생계-02]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기준:2025 / 출처 : 복지로)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저소득 가구 중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 (*저소득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여 주는 제도.

3.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2025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 급여 선정 기준]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기준중위소득 40% [의료 급여 선정 기준]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기준중위소득 48% [주거 급여 선정 기준]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기준중위소득 50% [교육 급여 선정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생계-03]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2025 / 출처 : 복지로)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교육지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3. 기준

(2025기준)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600만원 + 가구원 생활준비금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 가구원 생활준비금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409백만원 이하	1,000만원 + 가구원 생활준비금 이하

* 생활준비금 :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기준

4. 신청 : 각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생계-0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출처 : 2025 / 서울시 news.seoul.go.k)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란?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자격기준 및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자격기준

- 1)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2)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3)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3. 지원일수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4. 지원금액

‘25년 1일 94,230원 (‘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5. 문의 및 신청 : 주소지 보건소, 주민센터 혹은 120 다산 콜재단 02-120

[생계-05] 장애인 연금, 수당

(기준:2025 / 출처 : 복지로)

1. 장애인연금이란?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

- 대상자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2.3급 중복지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장애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

- 대상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3.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생계-06] 국민연금 장애연금

(기준:2025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2. 수급요건

- (초진일 기준) 초진일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인 대상자
- (보험료 기준)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 (장애 정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 1~4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3.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일자리-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2025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 지원한도 : 1일 8시간 ,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신청절차 : 사업주 동의를 받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신청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단계별 프로그램 : 진로상담, 직업훈련, 인턴 프로그램,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

3. 온라인 취업준비사이트

대기업, 공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위해 취업준비,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 등 채용 단계별 취업 콘텐츠와 장애인 채용 설명회 자료 및 채용 성공 사례등을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

- 신청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 제공서비스 : 취업준비, 서류 전형, 직무적성검사 등 취업콘텐츠 제공

자세한 정보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일자리-0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준:2025 / 출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국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 센터.

1. 주요 업무

- 취업지원 :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관리 : 근로자 실업급여, 능력개발비용 및 사업주 고용유지, 교육 훈련 비용 지원 관리.

2. 고용센터 :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및 재취업지원, 구인,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고용 서비스 제공.

3. 일자리센터 : 구직자 취업지원(면접기술 코칭, 동행 면접 등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4. 새일센터 : 출산 육가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인턴십연계 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5. 중장년 내일 센터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자세한 정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일자리-03] 동행일자리 사업

(기준: 2025 / 출처 : 서울시)

1. 공공근로 사업이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의사가 있는 각 지방자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 사업임.
주로 장기실직자나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 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보호와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공공근로 사업 종류(지자체마다 다름)

[서비스지원사업]

각종 도우미 사업

공공기관 지원업무(민원안내, 행정서비스)

각종 현황조사 지원

공공청사 출입자 발열체크 등 방역

[환경정화사업]

공원, 관광지,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공공시설 개보수, 공중화장실 고나리

꽃길 조성, 단순식재 조성등

3. 공공근로 신청 자격

: 지자체마다, 기준년도마다,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이 다름으로 각 지자체 통해 확인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각 지자체 주민 중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 원 이하인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제외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4. 신청 및 문의 : 각지자체 동사무소 및 구청.

[사회복귀-01] 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기준:2025 / 출처 :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에서는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 장애인 운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함.

1. 교육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지체, 뇌병변, 청각 등록 장애인
- 제 1종 및 제 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취득 희망자 및 소지자
- 운전 시 보조기기가 필요한 면허조건(E,F,G,H,I) 대상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해당 없음.
- 뇌병변장애인은 운전인지지각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가능함.

2. 교육 내용

1) 운전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전면허취득 과정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교육시간	8시간/4일	10시간/4-5일	10시간/4-5일	10시간/4-5일
교육내용	장내기능시험교육	도로주행시험교육	장애로 변화된 신체기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보조기기 적용 교육 실시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실제 운전 할 수 있도록 도로 주행 교육 실시

2)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 장애 정도에 맞는 자동차와 보조기기 정보 안내

3.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장애인 운전교육 02-901-1553(1552~6)

자동차 보조기기 및 운전체험 02-901-1556,1555

[사회복귀-02] 알코올 단주 모임

1. 알코올 단주모임(AA : Alcoholics Anonymous) 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경험과 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모임임.
퇴원 후 단주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철저하게 익명으로 운영되고
비직업적, 비종교적, 비정치적으로 운영 유지가 되고 있음.

가입비나 사례금은 필요하지 않고,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있는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며, 대
부분의 A.A모임들은 '12단계 치료'를 기초로 함.

자아성찰과 다른 회원들(알코올 중독자)와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단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12단계 치료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한 순간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며 실천해
나아가야지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

2. 참여방법

: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http://aakorea.org> 에서 전국모임 알람표를 확인 후 가능한
지역 / 시간 / 오프라인 or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음.



[정신건강-01] 서울시 정신건강보건사업

서울시는 정신건강보건사업을 통해 정신의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예방을 통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 사이트(<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01281>)에 들어가시면 지역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 25개소

연번	센터명	주소	상담전화(연락처)
1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로구 명륜동	02-745-0199
2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중림동	02-2236-6606
3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용산구 원효로1가	02-703-8340
4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 금호동	02-2298-1080
5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진구 자양동	02-450-1895
6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02-963-1621
7	종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량구 면목동	02-3422-5921
8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북구 하월곡동	02-2241-6314
9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북구 삼각산동	02-985-0222
10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도봉구 쌍문동	02-2091-5232
11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원구 상계동	02-933-4591
12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은평구 불광동	02-356-8683
13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대문구 홍은동	02-3140-8081
14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마포구 성산동	02-3272-4937
15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양천구 신정6동	02-2061-8881
16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서구 염창동	02-2600-5926
17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구로구 구로동	02-861-2284
18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금천구 독산1동	02-3281-9314
19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영등포구 당산동	02-2670-4793
20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작구 사당동	02-820-4072
21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악구 봉천동	02-879-4911
22	서초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초구 염곡동	02-2155-8215
23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남구 자곡동	02-2226-0344
24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송파구 거여동	02-402-5871
25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동구 천호동	02-471-3223

[정신건강-02]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산하 기관으로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살문제의 발 빠른 개입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안내

1)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치료비지원 서비스

-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의 어려움으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자살유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슬픔을 나누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개별상담을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 전화 및 내방 상담 통해 신청

3.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24시간 상담 전화)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자살예방상담	109
3	정신건강상담	1577-0199
4	청소년상담전화	1388
5	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

[돌봄가족을 위한 제도-01]

가족돌봄 휴가 제도

(출처 2025 / 고용노동부)

1. 가족돌봄휴가제이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 2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2. 휴가기간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돌봄가족을 위한 제도-02]

요양보호 가족 휴식 제도

(출처 2025 / 건강보험공단)

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중증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자

- 모든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3~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

4. 이용일수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

5.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대표번호 : 1577-1000

4. 전원 (요양 / 재활 / 호스피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원병원 입원절차 안내

1. 퇴원 후에도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퇴원 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면 퇴원 후에 환자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치료에 따라 전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전원 할 수 있는 병원의 구분

	요양병원	재활전문병원	호스피스 병원
입원대상자	노인성질환 심장,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뇌혈관질환자 각종 암환자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뇌혈관질환자 골절환자	치료가 종결된 말기 암환자
입원기간	6개월 이상 (장단기 입원가능)	병원에 따라 다름	1-2개월 병원에 따라 다름.
치료내용	내과적 치료 기본적인 물리치료	재활 및 작업치료	말기암 관리 통증관리

3. 전원을 위한 과정

-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선정 ⇒ 입원비용, 교통편, 공동간병인 또는 가족간병 가능여부, 병실환경, 병실종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을 둘러보고 선택 ⇒ 외래 진료 또는 직접 내방하거나 담당자와 상담 ⇒ 입원

<전원시 확인해야 하는 chec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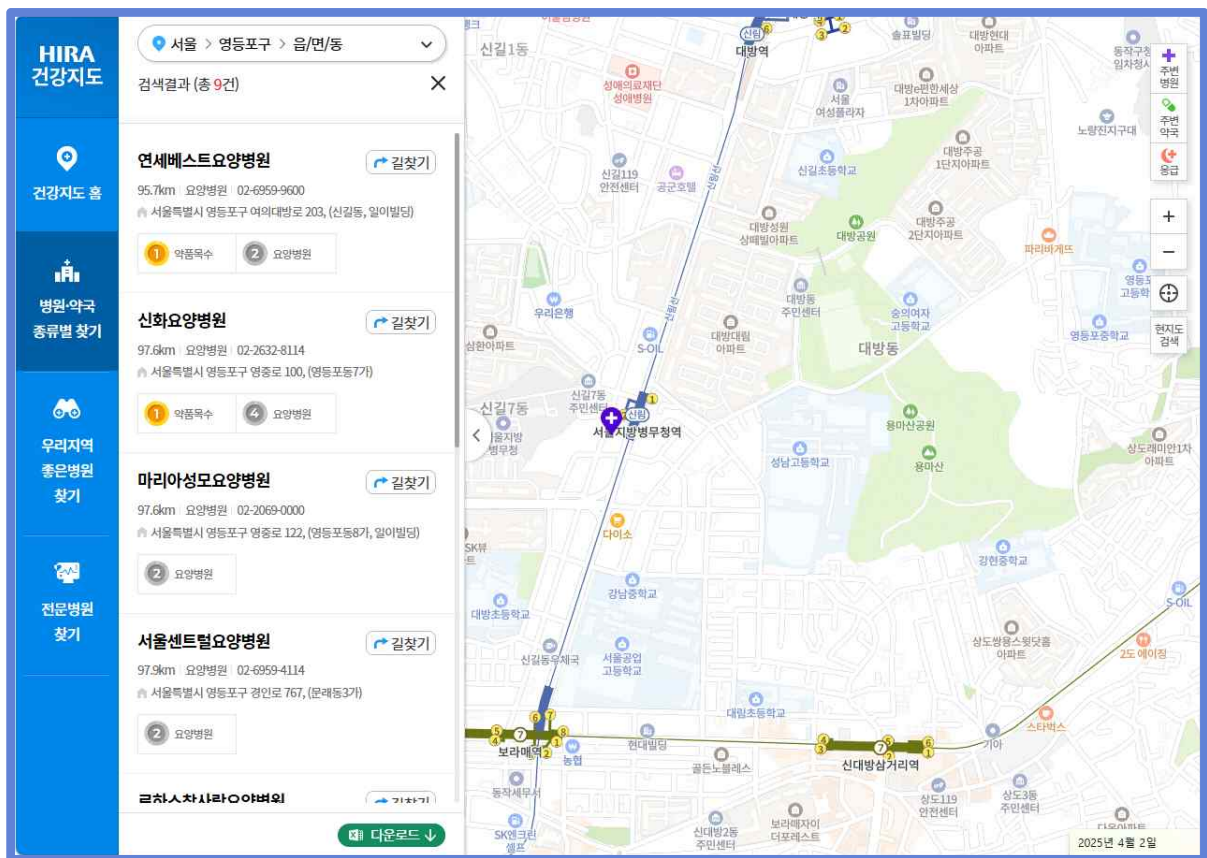
- ☒ 전원하고자 하는 병원에서의 최대 입원기간
- ☒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소모품 비용의 개인부담 여부
- ☒ 간병비용을 포함한 한 달 평균 병원비
- ☒ 가족간병 가능여부, 면회방법
- ☒ 환자의 특수한 재활치료(언어치료, 연하치료) 가능여부
- ☒ 중환자실 여부, 산소호흡기 구비여부, VRE 감염환자 입원여부
- ☒ 종교활동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여부

4. 전원에 필요한 서류

- ① 전원의뢰서, 처방전, 진료정보요약지
- ② 경우에 따라 최근 검사결과(CT, MRI)

요양·재활병원 찾는 방법

1. 보건복지부 진료의뢰 회송 사업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본원 진료협력센터 (본관 1동 1층)에서 요양 및 재활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원병원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진에게 진료협력센터 상담을 신청하세요.
2. 더 많은 병원 정보를 원하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병원, 약국 찾기를 통해 조건에 맞는 요양/재활병원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입원 안내

1.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이 통증 등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로 하는 의료입니다.

2. 서비스 내용

1) 증상 조절

메스꺼움, 구토, 수면장애, 식욕부진, 숨 가쁨, 변비 등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2) 통증조절

일반 의료기관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통증이 더 잘 조절됩니다.

3) 임종 돌봄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을 함께하는 임종이 더 뜻 깊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사별 돌봄

임종 후 남겨진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다양한 프로그램

음악요법, 미술요법, 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도움을 받아 삶을 의미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서울호스피스병원 정보(입원형, 가정형)

기관명	연락처	주소	유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화: 02-2258-1901 팩스: 02-2258-190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입원형(23병상) ·가정형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전화: 02-3779-2549 팩스: 02-3779-2559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입원형(14병상) ·가정형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전화: 02-2030-4296 팩스: 02-2030-4305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21	·입원형(18병상)
고려대구로병원	전화: 02-2626-2807 팩스: 02-837-927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입원형(10병상)
서울적십자병원	전화: 02-2002-8970 팩스: 02-2002-8986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입원형(18병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전화: 02-920-9379 팩스: 02-920-932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입원형(19병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전화: 02-2036-0419 팩스: 02-2036-0456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입원형(25병상) -가정형

기관명	연락처	주소	유형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전화: 02-6300-9088 팩스: 02-6300-9089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입원형(14병상)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전화: 02-3156-3208 팩스: 02-351-4389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입원형(19병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전화: 02-2276-7000 팩스: 02-2276-8126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입원형(19병상)
인성기념의원	전화: 02-2135-3577 팩스: 02-2135-3578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266	-입원형(20병상) -가정형
전진상의원	전화: 02-802-9313 팩스: 02-894-9313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3가길 22	-입원형(12병상) -가정형
중앙보훈병원	전화: 02-2225-1781 팩스: 02-2225-1709	서울시 강동구 진왕도로61길 53	-입원형(28병상) -가정형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전화: 02-970-2798 팩스: 02-970-2428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	-입원형(15병상)
안산의료재단 메트로호스피스	전화: 031-467-9880 팩스: 031-467-988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33번길 8	-입원형(28병상) -가정형

4. 입원 절차

말기 진단(담당의사) -> 호스피스 진료의뢰/방문 -> 해당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방문 -> 호스피스팀과 상담 -> 이용동의서 작성 -> 호스피스 이용

5. 준비서류

-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또는 전원의뢰서
- 의무기록사본 : 최근 검사 자료(혈액검사결과, CT/MRI 등), 의사 처방전
- 필름(CD)복사 : 최근 검사한 영상검사인 CT나 MRI 등
- 기관에 따라서는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찾는 방법

더 자세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중앙호스피스센터 (<https://hospice.go.kr>) 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춰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중앙호스피스센터
National Hospice Center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전문병원 찾기

지도로 찾기

상세검색으로 찾기

서울 지역 기관(21)

상급종합병원(8) 종합병원(9) 병원(2) 의원(2)

인천 지역 기관(6)

상급종합병원(3) 종합병원(2) 요양병원(1)

경기 지역 기관(23)

상급종합병원(2) 종합병원(13) 병원(3) 의원(3) 요양병원(2)

세종 지역 기관(0)

충남 지역 기관(3)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2)

충북 지역 기관(3)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1) 요양병원(1)

대전 지역 기관(3)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2)

강원 지역 기관(3)

종합병원(1) 의원(1) 요양병원(1)

경북 지역 기관(5)

종합병원(4) 병원(1)

대구 지역 기관(9)

상급종합병원(4) 종합병원(4) 의원(1)

울산 지역 기관(3)

상급종합병원(1) 요양병원(2)

부산 지역 기관(8)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5) 병원(1) 요양병원(1)

경남 지역 기관(6)

상급종합병원(2) 종합병원(2) 의원(2)

전북 지역 기관(7)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3) 병원(2) 요양병원(1)

지역

서울

전체

기관명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병원종류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요양병원
 ☐ 기타

서비스 유형

☒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초기화

검색

엑셀 다운로드

번호	시/도	시/군/구	기관종류	기관명	문의전화	서비스 유형	기관정보
11	서울	서초구	상급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1901	☒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 소아청소년	상세
10	서울	영등포구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3779-2549	☒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 소아청소년	상세
9	서울	은평구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2030-4296	☒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 소아청소년	상세
8	서울	구로구	상급종합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02-2626-2807	☒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 소아청소년	상세
7	서울	중구	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02-2276-2240	☒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 소아청소년	상세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2018.02.04.시행)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19세 이상 성인)

본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할 수 있는 기관으로,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누구나 추후 임종과정일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음.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료진으로부터 말기, 임종과정으로 판단된 경우)

본원은 의료진에 의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음.

3. 언제, 어떻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중단 이행이 가능한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으로 판단한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등)의 시행을 유보, 중단할 수 있음.

4. 작성 방법

: 담당의료진과 상의 후 사회사업팀(본관 2동 1층 상담실 혹은 신관 1동 1층) 방문하여 상담.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작성기관 확인 후 방문



5. 그 밖에 복지정보 및 기관은 무엇이 있나요?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

로그인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자주 찾는 서비스

[멤버십 변경](#)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바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경험해 보세요.

-83-



서울형 복지포털

서울소식 응답소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복지서비스
맞춤복지
신청서비스
복지소식
복지수첩

로그인



신청 서비스



위기가구 지원



장애인주택
특별자금 알리미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돌봄 SOS 상담신청



디딤돌소득
시험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울형 복지급여 서비스

서울복지

돌봄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자활

여성가족

2 / 26

<

>

[서울복지]

서울형 기초보장제 (해산/장제급여)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서울복지]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기존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에 적응수록 더 많이

[서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

맞춤 돌봄이 필요할 때?
☎02-120+3 전화하세요!

서울시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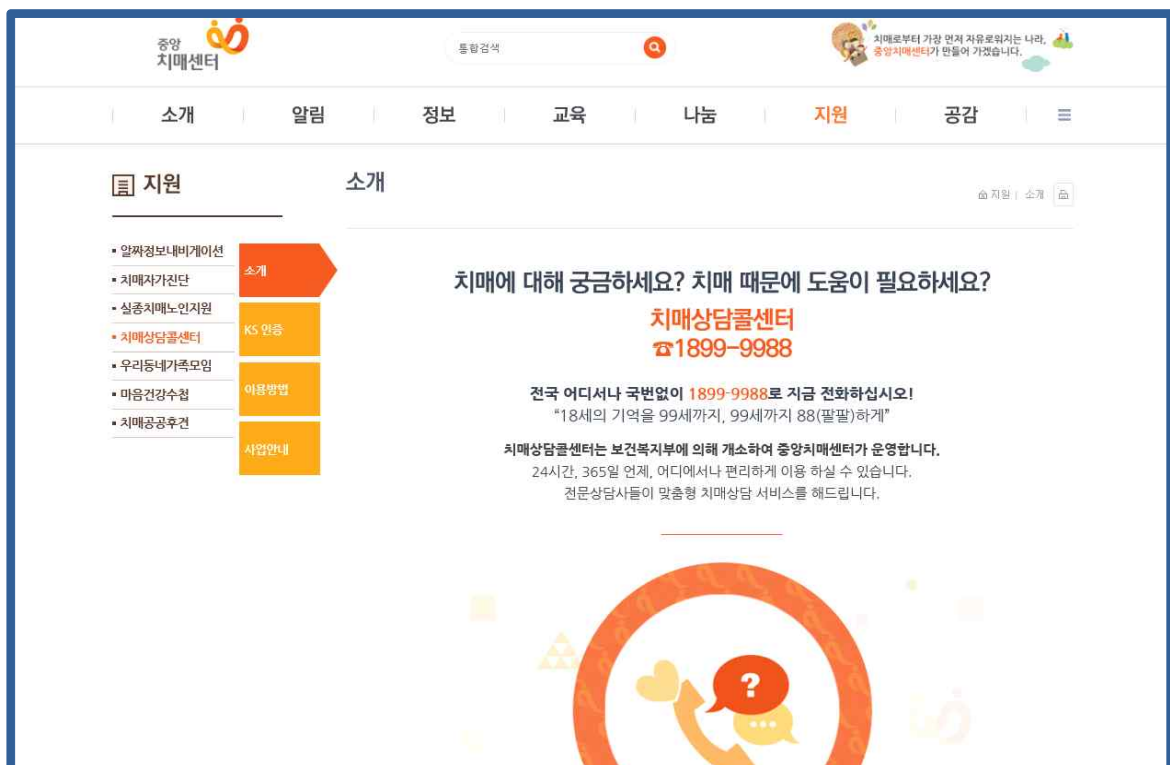




-84-

■ 서울시 정신건강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 blutouch.net

■ 보건복지부 [중앙 치매센터] : www.nid.or.kr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다시 건강한
새로운 국민의 나라*

[소식알림](#)
[고객참여](#)
[정보공개](#)
[재활원소개](#)
[자료실](#)
☰

모두를 위한 재활, 삶을 바꾸는 재활

장애인이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 진료예약(전화예약만 가능) 📞
- 건강검진예약 🗓️
- 전화번호 안내 ☎️
- 오시는 길 🗺️
- 증명서발급 안내 📄
- 의료용어 수어해설사전

재활병원
개인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재활연구소
재활연구의 중심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장애인 전문 건강정보포털

**중장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

-87-

[별첨] 본원 인근 복지관 연락처

1. 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주소	대표번호
1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82	02)2068-0075
2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02)804-4058
3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서울 금천구 독산로 72길 86-5	02)853-7203
4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 구로구 새말로 16길 7	02)838-4600
5	온수어르신복지관	서울 구로구 부일로9길 111	02)3666-8750
6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 동작구 상도로 11길 7	02)823-0064
7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1	02)580-2410
8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5	02)888-6144

2.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주소	대표번호
1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02)3667-7979
2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 17	02)6912-8000
3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구로구 고척로21가길 84-35	02)2611-1711
4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라길 25-10	02)830-6500
5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 동작구 양녕로 30길 19-4	02)824-1414
6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동작구여의대방로20길33 보라매공원내	02)829-7100
7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95 보라매공원 내	02)840-1500
8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	02)877-0750
9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02)880-0500

3.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주소	대표번호
1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3길 4	02)845-5331
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02)831-2755
3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02)868-6856-8
4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금천구 금하로29길 36	02)806-1376-7
5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3	02)852-0525
6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구로구 오리로22길 5	02)2613-9367
7	회원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구로구 벚꽃로 484	02)837-0761
8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02)826-2900-3
9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5차길 7	02)592-3721-3
10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작구 등용로 47	02)814-8114-5
11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32길 79	02)817-8052-4
12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작구 사당로14길 20	02)597-3710-2
13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작구 상도로39가길 7	02)824-6011-3
14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0	02)851-1767-9
15	서울YWCA봉천종합사회 복지관	서울 관악구 관악로 254	02)870-4400
16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관악구 호암로 549	02)876-0900
17	중앙사회복지관	서울 관악구 봉천로41길 33	02)872-5802
18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관악구 양녕로 74	02)886-9941-3

본 책자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의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안내서]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수록된 정보는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본관 2동 1층 상담실 - 전화 : 02-829-5477, 팩스 02-829-5478
신관 1동 지하1층 상담실 - 전화 : 02-6960-1045, 팩스 02-6960-1047